

식사 푸르지오 파크센트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33-206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 발표일(26.06.01.)로부터 1년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계약체결
일정	26.05.11.(월)	26.07.11.(토)	26.07.11.(토)	26.07.11.(토)	26.07.11.(토)

1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점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11.(토)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최초주택관리번호는 2026000098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6.05.11.(월)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098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 추첨 및 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26.07.11.(토) / 10:00 ~ 11:00	2026.07.11.(토) / 11:30	2026.07.11.(토) / 11:30
방 법	■ 건본주택 內 현장접수	■ 건본주택 內 추첨 및 발표	■ 식사 푸르지오 파크센트 주택전시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4-2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고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6.01.)로 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3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26번지 일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6층 4개동 총 458세대 중 조합취소세대 23세대의 잔여 17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최초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시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000098	01	074.9682	74	3	101	204
					102	1902
					104	2502
	02	084.8777A	84A	13	101	903, 1003, 1202, 1501, 2401, 2802
					102	2301, 2801, 3303, 3401
					103	401, 1001, 2403
	03	084.3593B	84B	1	103	3402
	합 계				17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타입)	세 대 수	동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차	2차	10%	10%	10%	10%	10%	10%	
					대지비	건축비	충분양가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6.11.20.			2027.04.19.	2027.09.20.	2028.01.21.	입주예정일
74	3	101동(4)	2층	1	235,212,091	415,787,909	651,000,000	2,550,000	30,0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227,850,000
		102동(2)	19층	1	246,773,975	436,226,025	683,000,000	4,150,000	30,0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239,050,000
		104동(2)	25층	1	254,361,462	449,638,538	704,000,000	5,200,000	30,0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246,400,000
84A	13	103동(1)	4층	1	263,394,184	465,605,816	729,000,000	6,450,000	30,0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255,150,000
		101동(3)	9층	1	267,729,891	473,270,109	741,000,000	7,050,000	30,0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259,350,000
		101동(2,3), 103동(1)	10층, 12층	3	272,065,598	480,934,402	753,000,000	7,650,000	30,0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263,550,000
		101동(1)	15층	1	276,401,305	488,598,695	765,000,000	8,250,000	30,0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67,750,000
		101동(1), 102동(1) 103동(3)	23층, 24층	3	280,737,011	496,262,989	777,000,000	8,850,000	30,0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271,950,000
		101동(2), 102동(1)	28층	2	285,072,718	503,927,282	789,000,000	9,450,000	30,000,000	78,900,000	78,900,000	78,900,000	78,900,000	78,900,000	78,900,000	276,150,000
		102동(1,3)	33층 ~ 34층	2	289,047,116	510,952,884	800,000,000	10,000,000	3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280,000,000
84B	1	103동(2)	34층	1	289,047,116	510,952,884	800,000,000	10,000,000	3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280,0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체결시	입주 시
74	27,500,000	2,750,000	24,750,000
84A	30,800,000	3,080,000	27,720,000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26.05.11.)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위임인(대리)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본인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증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주택전시관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계약자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한 경우 생략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주택전시관 비치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당첨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		위임장	계약자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위임용), 인감도장	계약자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2.0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1차 계약금	농협은행	355-0092-7564-13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농협은행	355-0092-7558-13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시	농협은행	355-0092-7558-13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잔금	공급금액의 90%	입주시(입주지정기간내)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비수도권	3억원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 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시행사(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식사동지역주택조합	(주)대우건설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원중1길 16, 7층 701호(식사동,예일엠타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을지로4가,을지트윈타워)
등록번호	445-20-02140	110111-2137895 (104-81-58180)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siksaprugio.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 및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4-2

■ 분양 문의 : 1533-2060

<https://siksaprugio.com>

사업주체 : 식사동지역주택조합 / 시공사 : (주) 대우건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대 표 번 호
1533-2060